

대한치과보험학회 최우수논문상 시상 규정 (2010년 10월 2일 제정)

1. 명칭: '대한치과보험학회 최우수논문상'으로 함.
2. 목적: 대한치과보험학회지의 양질의 논문을 투고하여 학회의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시상하고자 함.
3. 대상: 직전년도 대한치과보험학회지 게재된 원저 논문의 교신저자.
4. 단, 원저 논문이 5개 이상이 되지 못했을 시에는 이를 충족한 후에 통합하여 시상함.
5. 재원: 별도의 기금 출연이 있을 때까지는 학회의 운영비중 연구비로 책정된 금액에서 운영
6. 시상자 선발 심사 주관: 학술이사, 편집이사.
7. 논문심사 위원: 학회지 논문 심사위원중 제척 사유가 없는 위원
8. 포상 금액: 소정의 금액 (별도의 기금마련까지)

발표논문 심사제도 규정 (2010년 10월 2일 제정)

1. 논문 심사위원회는 임원회의에서 심사위원을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편집이사는 심사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3. 논문은 논문의 저자와 함께 근무하는 등의 제척사유가 없는 심사위원중 3인이상에게 2차의 심의를 거쳐 전원 게재가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게재한다.
4. 심사결과 평가지 양식은 별도로 마련한다.